

코로나 관련 재택근무 기준

- 1.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(RAT)를 하여 양성이 나오거나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
- 2. 기저질환자, 임신부, 고령자 동거가족,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미접종, 동거가족의 확진, 자가격리 통지 등 사유로 팀(실)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

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복무 기준 안내

접촉참고 기준 백신접종 기준	① 동일 공간에서 근무/생활하는 구성원 ②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(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)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③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
백신접종력 관계없음	[수동감시] 격리면제자로 출근 중대본에서 3일 이내 PCR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선제적으로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(RAT)에서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신청했다면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

- * 전담관리인은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(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)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동선에 해당되는 공간의 손닿는 곳을 락스 4% 희석한 소독액 걸레로 닦아주고 환기한다.
(분무소독이 효과성 대비 인체 악영향이 높아 질병관리본부 권고에 따름)
- * 위 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을 따랐으나 **노란음영**은 우리 대학 자체 지침임

확진된 교직원의 병가 안내

- 1. 코로나 검사로 확진된 교직원은 보건당국과 지자체의 안내와 지침에 따라 격리, 치료를 받는다.
확진자는 병가로 신청하고, 확진이 아닌 격리자는 재택근무로 신청해야 함.
- 2. 확진 통보 즉시 소속 전담관리인에게 '본인생년', '확진일자', '증상발현일자'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.
- 3. 확진자는 격리 통보서(통보 문자)의 격리일부부터 해제일까지(7일간) 병가를 신청하여 격리한다.
휴가원에 격리통지 SMS 또는 격리통지서를 후첨
- * 격리 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: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 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